

·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

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

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화서 화북간국지도건설 사업외 156 건인

257,137,460,356 원으로서

- 명시이월 (85 건) 183,943,487,290 원
- 사고이월 (72 건) 73,193,973,066 원
- 계속비이월 (0 건) 0 원이며

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